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51 호 2024. 4. 25.(목)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훈령 제35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1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훈령 제36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8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86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2-657호선)사업].....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90호[하천점용 허가(협약)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9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27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48호[- 대진실업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8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경희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 행위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중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민원 신청 편의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민원의 접수 및 관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항

2. 반복민원

3. 중복민원

4. 민원인(다수일 경우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민원은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종결한다.

제5조(민원처리)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민원과 그 밖의 민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회 소관 사무의 경우 자체 검토하여 처리한다.
2. 타 기관 소관 사무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방법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시	건명	민원인		민원내용	소관기관 (부서)	처리내용	결과 통지일	비고
			주소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민원인	주 소		
	성 명	전 화	
건 명			

위와 같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기존 규정에서 명시한 민원 처리 절차, 접수권자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행에 맞게 개선하고
- 나. 반복민원, 중복민원 등 민원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민원 접수 및 관리 방법(제3조)
- 다. 불수리 사항의 종류 및 처리 절차(제4조)
- 라. 의회 또는 타 기관 소관 사무의 처리 절차(제5조)
- 마. 민원 종류별 처리 기간(제6조)
- 바. 민원 처리 결과 통지 및 반환(제7조 ~ 제8조)
- 사. 의원 공유를 통한 민원 내용 활용(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경희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65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65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4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657호선)사업
 - 명 칭 : 이화1길(소2-657호선) 정비사업 및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50.0m, B=6.0 ~ 10.0m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사업기간 : 2024. 1. 4. ~ 2024. 12. 31.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편입토지조서'와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 (☎ 052-241-7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구	동			전체	편입			
합계					4,210.6	2,402.2			
1	북구	중산동	682-35	전	8.0	7.0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	곽○○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	곽○○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로 ***	곽○○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	곽○○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6길 ***	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침촌지구로 ***	곽○○	
2	북구	중산동	682-20	대	337.0	27.0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	한○○	
3	북구	중산동	682-26	전	280.6	277.0		울산광역시 북구	
4	북구	중산동	682-22	전	30.3	9.0		울산광역시 북구	
5	북구	중산동	1167-8	도	67.2	67.2		농림축산식품부	
6	북구	중산동	1166-52	도	25.1	4.0		울산광역시	
7	북구	중산동	1167-22	도	95.1	52.0		농림축산식품부	
8	북구	중산동	1166-91	전	15.0	15.0	울산 중구 성안동 ***	이○○	
9	북구	중산동	684-8	전	14.0	6.0	울산 중구 성안동 ***	이○○	
10	북구	중산동	1166-42	잡	32.0	10.0	울산 중구 성안동 ***	이○○	
11	북구	중산동	1166-65	도	22.0	7.0		울산광역시	
12	북구	중산동	1166-107	도	23.0	23.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	이○○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	이○○	
13	북구	중산동	1166-55	대	294.0	4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	이○○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	이○○	
14	북구	중산동	1166-56	도	66.2	1.0		울산광역시	
15	북구	중산동	1166-41	제	2,901.1	1,852.0		국토교통부	

□ 편입토지조서[변경] ※ 정정고시 대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구	동			전체	편입			
합계					4,210.6	2,902.1			
1	북구	중산동	682-35	전	8.0	7.6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	곽○○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	곽○○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로 ***	곽○○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	곽○○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6길 ***	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침촌지구로 ***	곽○○	
2	북구	중산동	682-20	대	337.0	27.8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	한○○	
3	북구	중산동	682-26	전	280.6	277.6		울산광역시 북구	
4	북구	중산동	682-22	전	30.3	8.8		울산광역시 북구	
5	북구	중산동	1167-8	도	67.2	67.2		농림축산식품부	
6	북구	중산동	1166-52	도	25.1	4.0		울산광역시	
7	북구	중산동	1167-22	도	95.1	52.4		농림축산식품부	
8	북구	중산동	1166-91	전	15.0	15.0	울산 중구 성안동 ***	이○○	
9	북구	중산동	684-8	전	14.0	5.6	울산 중구 성안동 ***	이○○	
10	북구	중산동	1166-42	잡	32.0	9.5	울산 중구 성안동 ***	이○○	
11	북구	중산동	1166-65	도	22.0	6.9		울산광역시	
12	북구	중산동	1166-107	도	23.0	23.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	이○○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	이○○	
13	북구	중산동	1166-55	대	294.0	4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	이○○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	이○○	
14	북구	중산동	1166-56	도	66.2	0.6		울산광역시	
15	북구	중산동	1166-41	제	2,901.1	2350.8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90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119재난대응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화동로 178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 608-1번지, 호계동 943-2번지	하천의 명칭	동천
점용 내용	수난안전시설물 설치(경고판, 구명부환)	점용 면적	0.26m ² ×2개소=0.52m ²
점용 기간	2024. 4. 23. ~ 2099.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9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정자1길 111	정자동 434-14	2024. 4. 25.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4.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627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59,338m²
 -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m²)

구분	계	관 리 사무소	체 육 활동장	특성화 활동장	야영장	주차장	내 부 도로	녹 지	정화조	저류조
	59,338	3,104	2,969	1,619	11,786	2,043	11,467	25,245	0	1,10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5. 사업기간
 - 가. 당 초 : 2014. 8. 28. ~ 2024. 6. 31.

나. 변 경 : 2014. 8. 28.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 입	성명	주소	권리자명	주소	
합계					59,338					
1	신명동	104-10	임	11,595	11,595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2	신명동	104-7	임	35,511	35,511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3	신명동	104-4	임	8,022	8,022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4	신명동	104-15	임	375	375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5	신명동	산1-3	임	1,732	1,732	고*숙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동 ***호(월락동, *****)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박*진	전라북도 남원시 총정로 ***, ***동 ****호(월락동, ** *** ****)			
						박*면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동 ***호(월락동, *****)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윤*희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동 ***호(월락동, *****)			
6	신명동	104-11	도	1,374	1,374	국토교통부				
7	신명동	104-12	임	554	554	국토교통부				
8	신명동	산27-3	도	160	160	국토교통부				
9	신명동	산28-2	구	15	15	농림축산식품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648호

- 대진실업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4. 24.(수) ~ 2024. 4. 29.(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지구 공장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주)대진실업주식회사</p> <p>다. 시 공 자 : (주)단양종합건설</p> <p>라. 설 계 자 : (주)세명종합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주)세명종합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지구 2B 2L ○ 대지면적 : 5,950㎡ ○ 연 면 적 : 6,101.83㎡ ○ 규 모 : 지상2층, 1개동 ○ 세 대 수 : 해당없음 ○ 공사기간 : 2024. 4. ~ 2024. 9.(6개월) ○ 허 가 일 : 2024. 1. 4. ○ 착공신고수리일 : 2024. 4. 26.(예정) ○ 공 사 비 : 4,000,000,000 원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4,4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점검 (항타기 및 항발기)	2	2,000,000	4,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계	2	2,000,000원	4,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4. 24.(수)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4. 29.(월)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4. 4. 29.(월)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4. 4. 29.(월) 10:00까지

※ 적격심사대상이므로 확인서류 필히 제출(미제출 시 자격 미달로 선정제외)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4. 30.(화) 10: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346호(2024. 3. 7.)**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지정 및 단독입찰일 경우 단독입찰 한 자 선정. 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있는

자료 한정

-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

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1. 총괄

심사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p>평가점수</p> <p>○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p>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p>*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p> <p>* 는 절대값 표시임.</p> <p>*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p>*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p> <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합계	10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9.10.0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준용

[별표 2-1]

■ 5천만원 미만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50					
자격점수	25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 특급기술인 : 25점 - 고급 기술인 이하 : 실격				
교육훈련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 교육이수 : 25점 - 교육 미이수 : 실격				
2. 신용도	50					
부실벌점	2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업무정지등	20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BBB-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10	9	8	0
총 계	100					

[별표 2-2]

■ 5천만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배점표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5											
책임기술인			25											
사업책임 (30점)	자 격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경 력	년수	13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13	11.7	10.4	9.1	7.8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12	10.8	9.6	8.4	7.2										
분야별 책임기술인			30											
분야별 책임 (25점)	등 급	해당분야	6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6</td> <td>6</td> <td>5.5</td> <td>5</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6	6	5.5	5										
경 력	년수	12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2	10.8	9.6	8.4	7.2										
실 적 (최근7년)	건수	12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최근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건수	25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5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신용도			10											
	부실벌점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시정’또는‘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구분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정지 등		절대평가	3	- 최근 1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 급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6.0	5.4	4.8	4.2	3.6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남은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6월 이상 9월 미만	9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4.0	3.6	3.2	2.8	2.4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000 ~ 000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4.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수행기관명

[서식 2]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건축주택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 주택건설사업장 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3부. 끝.

[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서식 3]

참여기술인 총괄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 위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술인		000000-***** (만00세)				특급자격 취득일: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000000-***** (만00세)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4]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 분야 전체 경력		년 월	비 고		
기 간	년 월	업 체 명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해당분야 경력

연번	참여 기간	참여 일수	용역명	발주자	공사 종류	직무 분야	전문 분야	가중치	환산 일수

3. 해당분야 실적

하천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년 월)	담당 업무	소속 회사	직위	발주청

4.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 . . ~ . . .	(주)
점 수				

- ※ 경력의 참여일수 란에는 경력증명서의 “인정일”을 기재한다.
- ※ 해당분야 경력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력증명서로 같음” 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은 미제출 한 것으로 처리한다.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1부만 첨부한다.
-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원본 제출)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이수한 교육실적을 기재한다.
- ※ 개인별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란 5일 이상이고 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을 말함
- ※ 교육수료증을 증빙서류로 첨부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1·2종 시설물 여부	과업 개요	과업기간 (년 월)	준공금액 (천원)	지분율 (%)	적용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 ~ **.*.*.* (년 월)					
2				**.*.*.* ~ **.*.*.* (년 월)					
	계	건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준공실적에 한하며, 연도란에 “○년 ○월○일~○년○월○일”로 기재(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1, 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과업 개요란 에는 용역 수문 규격(H*B*련)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발주자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시정’,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불량’ 처분은 0.5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월)	사유	관련규정	처분청	비고
수 행 기 관			. . ~ . (월)				
			. . ~ . (월)				
	계						
참 여 기술인			. . ~ . (월)				
			. . ~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8]

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벌점점수 (점)	누계평균 벌점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수 행 기 관							
		소계					
참 여 기 술 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참여기술인 업무 증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합계								

※ 용역업무 참여현황에는 타 용역에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중인 용역만 작성대상으로 한다.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해당 참여기술인은 0점 처리

[서식 11-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미만)

□ 회사명 : ○○○○○○○(100%)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25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5	
2. 신용도	계	50	
	부실벌점	20	
	업무정지 등	20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10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 기술인의 기술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 교육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6항에 따른 교육 이수)		
2. 신용도	계		
	부실별점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설도(신용평가등급)		

[서식 11-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5천만원 이상)

□ 회사명 : ○○○○○○(100%)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 건 수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건 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건 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합 계			
	사업책임 기술인	계		
		자 격		
		경 력		
		실 적(건수)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등 급		
		경 력		
		실 적(건수)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실 적(건수)	
	3. 신용도	계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정지 등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업무중첩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가중치를 반영한 인정 일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체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가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3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접수순) : 종합 1, 토목1, 건축4

연번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2	(주)태인이앤씨	정혁창	울산 제7호	토목 (교량및터널 수리)	
3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	울산 제5호	건축	
4	(주)오에스엔지니어링	마재열	제274호	건축	
5	(주)한국건설안전원	최정화	울산 제25호	건축	
6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지구 2B2L 공장신축공사		
2. 시 공 사	(주)단양종합건설		
3. 발 주 자	대진실업(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세명종합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공 사 비	₩100,000,000(예정)	공사기간	2024. 4. ~2024. 09. 05
현장주소	울산 북구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지구2B2L		
공사내용	공장신축공사중 파일공사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밀안전점검[<input type="checkbox"/>] 초기점검[<input type="checkbox"/>]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input type="checkbox"/>]		
안전점검 내용	파일 천공기 (높이10M 이상)을 사용하는 공사 2회		
안전점검 비용	기초금액 4,400,000(VAT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4년 4 월 17일

신고인 (주)단양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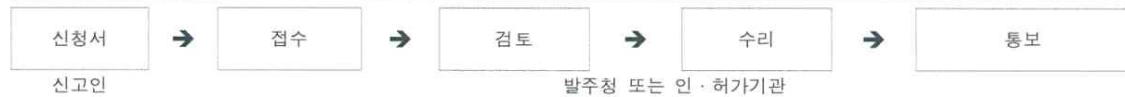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중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예 정 공 정 표

(현장명 : 달천동 모바일테크밸리지구2B2L 공장 신축공사)

(주)단양종합건설

